

2019. 5. 17. 10:00

제2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5.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3조에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9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16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기금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7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 등 분야 교류·협력사업과 군이 위 주민을 위하여 하는 제반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통일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성별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국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남북교류 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군 지원 사업
2.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달성군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제4조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 제6조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4조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의원들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군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동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는 군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연구단체의 나머지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군의회에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 ① 대표자가 연구단체를 군 의회사무국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제2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등록된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등록된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 계획의 승인이나 연구 등 활동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에 그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의 수리, 연구 등 활동계획의 승인 및 연구 등 활동비의 지원을 하며, 연구활동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군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변경)과 그 취소
2. 연구주제 조정과 연구 등 활동 계획의 승인
3. 연구 등 활동비 지원 및 회수
4. 연구단체의 육성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가입) 군의회 의원은 제4조에 따라 등록(변경)된 연구단체 중 1개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연구 등 활동비 집행 등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받은 연구 등 활동비 범위에서 그 연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 연구 등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등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등 활동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등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등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 등 활동비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연구활동 기간)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연구 등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장은 그 보고서를 이용하여 의원 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설 립 목 적				
구 성 의 원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주 요 내 용 요 약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 부 계 획	「따로 붙임」	
연구 활동 비	총 액	금 원(W)
	세부내역	※ 「따로 붙임」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경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 방법 및 세부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사항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경일자		
변동사유		
기 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연구목적		
심사 결과	내용	
	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 붙임 :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요구내역(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	(보고서 별첨)
연구 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첨부)

- 붙임 1. 연구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 내역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 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2)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7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과 본문의 ‘공무 국외여행’ 을 모두 ‘공무 국외출장’ 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1/2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안 제4조)
-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변경 (안 제8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부실한 국외연수,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제명과 본문의 ‘공무 국외여행’을 모두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 하였고,
-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1/2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공무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사항을,
- 안 제8조에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달성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 ① 의원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그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부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원 및 제2항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위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외부 위원의 비율이 2/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내용을 기준으로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허가여부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부의된 심사대상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 국외출장임이 분명한 경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지 않고 그 허가의결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 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달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외부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 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의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제4호인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의원이 그 출장 경비를 제4조제5항 및 제6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부당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 다만 그 지출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즉시 그 계획서를 첨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여부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이 허가의결 되어 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출장을 허가하는 경우 의장은 위원회 허가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출장계획서를 달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 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 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집행) ① 의원이 제2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공무 국외출장 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제5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6조

-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군세 감면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9. 7. 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현행 감면 조례상 자동차세 면제 대상인 ‘시각장애 4급’ 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에 해당하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으로 변경하고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한을 2022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조)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6.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9. 4. 3. ~ 4. 23.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군세 감면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에 현행 감면 조례상 자동차세 면제 대상인 ‘시각장애 4급’ 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에 해당하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으로 변경하고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 안 제3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

면제한다.

② 장애인인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인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

<u>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u>제38조제4항제2호</u>에서 "조례로 정하는 읍"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u>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u>제38조제4항제1호</u> 각 <u>목을 제외한 부분</u>----- -----.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1.1.]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7.1.]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7.1.] [법률 제29450호, 2018.12.31.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타법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시각장애인_제2조 관련)

현 행		개정 후('19.7.1 시행)	
제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급	1. 좋은 눈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관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 추가

4.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안 제4조)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5.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 2019. 4. 10. ~ 4. 30.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관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 추가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
- 안 제17조에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개정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성별영향분석평가)(생략)	제4조(성별영향평가)(생략)
② 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u>분석평가</u>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_____ _____ _____ <u>성별영향평가</u> _____
제1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달성군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달성군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

참고 1

관계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부 칙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등 정비
 -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별영향평가 또는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5.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 2019. 4. 10. ~ 4. 30.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별영향평가 또는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조례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개정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제목 “(분석평가의 대상)”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같은 조 본문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 제목 “(분석평가서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8조 제목 “(분석평가결과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제도”를 “성별영향평가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한다.

제16조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7조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 제목 “(분석평가 위탁)”을 “(성별영향평가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u>성별영향분석평가</u>”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u>분석평가</u>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략) ② 군수는 <u>성별영향분석평가</u>(이하 “<u>분석평가</u>”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u>분석평가</u>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u>성별영향평가법</u>」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평가</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u>성별영향평가</u>”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u>평가</u>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성별영향평가</u>(이하 “<u>성별영향평가</u>”라 한다) ③ <u>성별영향평가</u>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 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이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 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성 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 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 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 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 별영향평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제5조(특정성별영향평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 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	특정성별영 향평가
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 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 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성별영향평가위원 회 특정성별영 향평가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성별영향 평가

1. ~ 3. (생 략) 제7조(분석평가서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u>분석평가</u> <u>서</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8조(분석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u>분</u> <u>석평가</u>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u>분석평가</u>제도의 운 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u>성별영</u> <u>향분석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u>분석평가</u>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u>분석평가</u>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에 관한 사항 3. <u>분석평가</u> 결과와 성인지(性認 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u>특정성별영향분석</u> <u>평가</u>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u>성별영향평가</u> <u>서</u>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u>성별</u> <u>영향평가</u> ·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u>성별영향평가</u> <u>성별영향</u> <u>평가위원회</u> · ② · 1. <u>성별영향평가</u> 2. <u>성별영향평가</u> 3. <u>성별영향평가</u> 4. <u>특정성별영향평가</u>
---	---

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생 략) 제10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2 (생 략) 3. <u>분석평가</u>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u>분석평가업무</u>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6조(<u>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u>)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u>분석평가업무</u> 담당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u>분석평가책임관</u>으로 지정한다. 1. <u>분석평가</u>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u>분석평가</u>의 실시 및 <u>분석평가서</u>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u>분석평가결과</u>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u>분석평가</u>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u>분석평가</u>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u>분석평가</u>에 관한 사항 제17조(<u>분석평가 교육</u>) ① 군수는 <u>분석평가</u>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성별영향평가</u> 제14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성별영향평가업무</u> 제16조(<u>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u>) ① <u>성별영향평가업무</u> <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1. <u>성별영향평가</u> 2. <u>성별영향평가</u> <u>성별영향평가서</u> 3. <u>성별영향평가</u> 4. (생 략) 5. <u>성별영향평가</u> 6. <u>성별영향평가</u> <u>성별영향평가</u> 제17조(<u>성별영향평가 교육</u>) <u>성별영향평가</u>
---	---

른 <u>분석평가</u>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u>분석평가</u> 업무와 관련 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u>분석평</u> <u>가</u>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18조(<u>분석평가 위탁</u>)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한 효율적, 전문적인 <u>분석평가</u>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단체 등에 <u>분석평가</u>에 관한 사무를 위 탁할 수 있다.	<u>성별영향평가</u>..... ② <u>성별영향평가</u>..... <u>성별영향평</u> <u>가</u>..... 제18조(<u>성별영향평가위탁</u>)..... <u>성별영향평가</u>..... <u>성별영향평가</u>.....
---	--

붙임 2)

참고 1

관계법령(발췌)

□ 성별영향평가법

부 칙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1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5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30조)

5.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 2019. 4. 10.~4. 30.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 안 제5조~제8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제21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22조~제25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26조~제30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인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인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평가하며, 주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그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양성평등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등

제5조(조성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일괄하여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조성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군의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군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9조(조성 기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에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교통시설물, 공원·녹지 및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용 시 사고의 방지 및 편리한 대내외 통행 구조
2. 구성원이나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5조(주거단지) 군수는 주거단지 조성이나 주택 건축 등에 관한 행정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6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능력개발 내실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여성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2조(설치)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7조 따른 달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4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 구성 및 운영

제26조(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구성 및 임기) ① 참여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리플렛, 홍보물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9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활동에 참여한 참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해촉)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일비)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달성군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5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사유

- (재)달성복지재단이 화원시장(201호)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
 - 법 인 명 : (재)달성복지재단
 - 사용기간 : 2019. 5. 1. ~ 이전 시(1년 단위 재계약)
 - 이전장소 : 화원시장(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12길 66) 2층
☞ 기존 : 달성군 의회(1층)에서 사용
 - 면 적 : 783.03㎡(전용면적 596.43㎡ 공용면적 186.6㎡)
 - 사용목적 : (재)달성복지재단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허가하여 주민의 복지편의 도모를 위함.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II. 검토의견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요청 이유는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이 기존 달성군 의회 1층건물에서 사용하다가 달성군 소유인 화원시장(201호)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위와 같이“(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동의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 제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2. 제출사유

- (재)달성복지재단이 화원시장(201호)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
 - 법 인 명 : (재)달성복지재단
 - 사용기간 : 2019. 5. 1. ~ 이전 시(1년 단위 재계약)
 - 이전장소 : 화원시장(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12길 66) 2층
☞ 기존 : 달성군 의회(1층)에서 사용
 - 면 적 : 783.03㎡(전용면적 596.43㎡ 공용면적 186.6㎡)
 - 사용목적 : (재)달성복지재단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허가하여 주민의 복지편의 도모를 위함.

4. 의결요청 내용

-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의결)를 득하고자 함.

참고 1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물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